



제422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직원을 포함한 건강증진계획 수립 등〉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직원을 포함한 건강증진계획 수립 등	3
2. 교직원 정신건강 치유 지원	9
※ 참고자료	
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개요	13
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개요	14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개요	15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2. 13.

다. 회 부 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인 2024년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학교의 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했어야 하나, 현행법상 건강증진기본계획과 건강증진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계획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

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직원을 포함한 건강증진계획 수립 등(안 제2조의3 및 제7조의2)

개정안은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라 함)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u>학생의</u>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2조의3(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학생 및 교직원</u> ----- ----- ----- ----- <u>. 다만,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현행	개정안
1. <u>학생</u>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u>학생</u>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u>학생</u>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략) 제7조의2(<u>학생건강증진</u>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u>학생</u>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u>학생건강증진</u>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u>학생건강증진계획</u>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u>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u>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1. <u>학생 및 교직원</u>----- ----- 2. <u>학생 및 교직원</u>----- ----- 3. -----<u>학생 및 교직원</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u>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u>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u>학생 및 교직원의</u>----- -----<u>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u>-----. ④ ----- -----<u>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증진계획</u>----- -----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정책 목표, 기본 방향,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시행·조정·평가하

는 체계임.

이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3¹⁾에 근거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영역을 포괄하여 사회 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수립되고 있음.

한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는 단기 계획으로, 「학교보건법」 제7조의2²⁾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

1)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흥기에 찢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사의 정신건강증진 및 치유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별도의 기본계획·시행계획이 부재하였던 교직원의 건강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규정하였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5차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음.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라 함)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며,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 2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임.

< 관련 기본계획 비교표 >

구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주체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주기	5년	5년	5년
정책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모든 학생	전 국민	전 국민
주요 내용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등 여타 관련 계획들과 상호 참고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발견 체계 강화’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등과 관련성이 있는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작용을 위해 계획 간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본계획간 연관성 예시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 금연 ◦ 절주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비만	
◦ 보다 건강하고 질높은 학교급식 제공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영양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 기 발견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 원 강화	◦ 자살예방 ◦ 지역사회 정신건강	◦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또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학교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범
부처 차원의 계획으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역
할분담 및 포괄적 협력체계 강화로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와 중복투
를 방지함을 계획의 의의 및 목표로 하고 있고³⁾,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당시, 기추진 중인 대책은 당초
대로 추진하되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학
생 건강 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
건강복지기본계획(구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명시하였던 것⁴⁾ 또한 이들
계획간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3)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2p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참고

4)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33p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참고,
붙임자료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참조.

2. 교직원 정신건강 치유 지원(안 제11조 및 제13조)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를 하고,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직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u>학생</u> 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u>학생</u>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u>학생</u> 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u>학생</u> 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u>학생</u>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④ (생략)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생략) <u><신설></u>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생 및 교직원</u> ----- ----- ----- <u>학생 및 교직원</u> ----- ----- -----. 1. (현행과 같음) 2. ----- <u>학생 및 교직원</u> ----- ----- 3. ----- <u>학생 및 교직원</u> ----- ----- 4. ----- <u>학생 및 교직원</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u>

현행	개정안
	<u>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재 학교 내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교직원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명확한 지원 절차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의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안 제13조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적 회복을 지원 받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⁵⁾,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어⁶⁾ 적합한 지원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교육위원회('25.1.7.)에서 가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의안번호 2396, 강경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96,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숙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진료 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바,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치료 지원을 한다는 동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참고 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 ~'28) 개요

□ [정책영역 01]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학교단위 체육활동 확대	1-1-1. 신규 체육수업 시간 최대 확보
	1-1-2. 계속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1.2.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지원	1-2-1. 신규 학생 건강체력 수준 진단체계 강화 및 진단 대상 확대
	1-2-2. 계속 학생 건강체력교실 운영 다양화
1.3. 체육활동 일상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1-3-1. 신규 학교·가정 연계 학생 중심 체육활동 강화
	1-3-2. 신규 수영장 및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조성
1.4.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체육활동 강화	1-4-1. 신규 체육단체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1-4-2. 신규 늘봄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강화
	1-4-3. 신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 마련

□ [정책영역 02] 학생 중심 건강서비스 확대

정책과제	세부과제
2-1. 건강 수준 진단 내실화 및 증진활동 강화	2-1-1. 신규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통합
	2-1-2. 신규 학생 건강 수준 진단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
2-2. 정신건강 취약 학생 보호 강화	2-2-1. 신규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견 체계 강화
	2-2-2. 신규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
2-3. 건강취약 우려 학생에 대한 밀착지원	2-3-1. 계속 장애 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강화
	2-3-2. 신규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2-3-3. 계속 과몰입·과의존·중독 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 강화
2-4. 주요 질환·질병 예방관리 강화	2-4-1. 계속 만성·희귀 질환 등 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강화
	2-4-2. 신규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정책영역 0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과제	세부과제
3-1. 학교시설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3-1-1. 계속 석면 건축물 일상관리 및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확보
	3-1-2. 신규 교사 내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및 환경위생 개선
	3-1-3. 신규 교육시설 유해물질 관리 철저
3-2. 학교주변 위험요인 관리 강화	3-2-1. 계속 학교 주변 건강 유해시설 등 관리 철저
	3-2-2. 신규 학교 인근 대규모 공사장 등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강화
3-3.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3-3-1. 신규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3-3-2. 신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 지원

□ [정책영역 04] 건강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정책과제	세부과제
4-1. 성장·발달단계 기반 교육지원 내실화	4-1-1. 신규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건강교육 강화
	4-1-2. 신규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4-1-3. 계속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행정 지원
4-2. 가정·지역사회 연계 건강교육 활성화	4-2-1. 신규 가정과 연계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4-2-2. 계속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홍보 강화
4-3. 범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4-3-1. 계속 세부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기구 운영
	4-3-2. 신규 미래 발생 가능한 건강문제 조사 등 선제적 대비
	4-3-2. 신규 위기 대응능력 향상 지원
4-4. 지역사회 인·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4-4-1. 신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치·운영
	4-4-2. 신규 건강정책 관련 담당인력 인적교류 활성화
	4-4-3. 계속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 배치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기본 원칙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건강생활 실천

- 1 금연
- 2 절주
- 3 영양
- 4 신체활동
- 5 구강건강



정신건강 관리

- 6 자살예방
- 7 치매
- 8 중독
- 9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 10 암
- 11 심뇌혈관질환
- 12 비만
- 13 손상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15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 16 기후변화성 질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17 영유아
- 18 아동·청소년
- 19 여성
- 20 노인
- 21 장애인
- 22 근로자
- 23 군인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24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 25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 27 자원마련 및 운용
- 28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 ~'25) 개요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	----------------------

정책 목표	1.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u>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u> 2. 전 국민이 <u>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u> 3. 정신질환자의 <u>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u> 제공 4. 정신질환자가 <u>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u> 5. 약물 중독, 이용 장애 등에 대한 <u>선제적 관리체계</u> 마련 6.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u>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u> 구현
----------	--



추진전략	핵심과제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2.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3.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정신의료 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1.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2. 지역 기반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 3.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4.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	1.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중독 및 디지털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1.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2. 마약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3.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2.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3.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 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3. 공공자원 역량 강화 4. 통계 생산체계 정비 및 고도화 5. 정신건강분야 전략적 R&D 투자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참고 4

학생 건강관련 부처별 종합대책 현황(22건)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에서 발췌

영역	종합대책	주관부처	관련 법령
종합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차, 2016-202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아동정책기본계획 (제1차, 2015-2019)	복지부	아동복지법
신체 건강 (10)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2018)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국조실	-
	학생감염병예방 종합대책(2016)	교육부	학교보건법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식약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2019)	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제3차, 2015-2017)	식약처(국조실,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	식품안전기본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기본계획('15-'19) 당류/나트륨저감화종합계획('16-'20)	식약처	식품위생법
정신 (5)	정신건강종합대책	복지부 (법제처,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 자복지서비스지원법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복지부(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 과기부, 통계청,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2018년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교육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차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9-'21)	과기부(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등 10개부처	국가정보화기본법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환경 (5)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18-'22)	교육부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15-'19)	환경부(부처합동)	학교보건법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9월)	환경부(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산자부 등)	-
	석면 관리기본계획('19-'23)	환경부(교육부, 고용부, 식약처 등)	석면안전관리법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 종합대책(2015)	교육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